

보도자료

2018. 8. 2.



대 법 원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

인사총괄심의관실

담당자

인사제1심의관 성원제
인사제2심의관 안금선
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
공보관실 ☎ 3480-1451

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

- 대법원은 **2018. 11. 2.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**과 관련하여,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**2018. 8. 3.(금)부터 2018. 8. 13.(월)까지** 법원 내·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임
- 대법원은 또한 **2018. 8. 3.(금)부터 2018. 8. 9.(목)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(3인)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**을 받을 예정임
-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**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 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, 주요 경력, 재산,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**하고 이 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임
-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,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함

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등 공고

1.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

-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8. 8. 3.(금)부터 2018. 8. 13.(월)까지 법원 내·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고자 함
- 피천거인은 판사·검사·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(법조경력)이 20년 이상이고, 45세 이상이어야 함
- 2018. 8. 2.(목)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피천거인 자격, 천거방법,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임

2.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

- 대법원장은 또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을 위하여 2018. 8. 3.(금)부터 2018. 8. 9.(목)까지 법원 내·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고자 함
-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
- 2018. 8. 2.(목)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추천방법, 추천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천 공고를 할 예정임

3. 향후 예상 일정

-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,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대상자의 학력, 주요 경력, 재산,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,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-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임

- 따라서 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되고,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
 -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: 2018. 8. 2.(목)
 -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: 2018. 8. 3.(금)부터 8. 13.(월)까지
 -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: 천거기간 종료 후 수일 내
 -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: 명단 공개 후
 - ※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별도 공고 예정임
 - 추천위원회 개최: 추후 결정
 -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·업무 등 정보 공개: 추천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
 -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: 명단 공개 후
 - ※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 별도 공고 예정임
 - 대법관 제청: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수일 내